

외국환거래법/대외무역법(2027년 대비)

2026-09-30

페이지	위치	수정 전	수정 후
61	4. 업무의 감독과 건전성 규제 등 앞에 추가		(4) 제20조의3(외국환업무의 위탁) ①항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”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.<개정 2025. 12. 30.> 1. 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·수령 신청의 접수 2. 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·수령을 신청하는 자에 대한 실명확인 또는 실명확인자의 지원 3. 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·수령 대금의 수납 및 전달 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무에 딸린 사무 5.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 (5) 제20조의3(외국환업무의 위탁) ②항 ~⑤ ②항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. 1. 「상법」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국내에 설립된 회사 또는 같은 법 제614조에 따른 외국회사의 영업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. 직전 사업연도의 자기자본(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말한다) 또는 영업기금이 3억원 이상일 것 나.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과 전산설비를 갖춘 것 다. 회사·영업소 또는 그 임원(영업소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. 이하 라목에서 같다)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인가받을 수 없는 자 에 해당하지 않을 것 라. 발기인 또는 임원이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 2.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금융보조업자 중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「은행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자금인출업 무 및 한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 ③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계약 체결 예정일을 기준으로 15영업일 전까지 재정경 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 다만, 체결하려는 계약이 종전의 위탁계약을 동일한 내용으로 경 신하는 것인 경우에는 계약 갱신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할 수 있다.<개정 2025. 12. 30.> ④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위탁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변경계약 체결 예정일 또는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7영업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<개정 2025. 12. 30.>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탁사무의 종류별 수탁기관의 범위와 위탁사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<개정 2025. 12. 30.>
55	(4) 인가 결정	(4) 인가 결정(영 제 18조 제6항)	(4) 인가 결정(영 제 18조 제7항)
55	(5) 변경 또는 폐지 신고	(5) 변경 또는 폐지 신고(영 제 18조 제7항)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 라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0 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 게 알려야 한다.	(5) 변경 또는 폐지 신고(영 제 18조 제8항) 외국환중개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거나, 해산 또는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7일 전 까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 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56	(2) 예탁금의 범위 (영 제18조 제8항)	(2) 예탁금의 범위 (영 제18조 제8항)	삭제
164	제39조	제39조	영 제39조
165	제39조의 2	제39조의 2	영 제39조의 2
230	① 변경승인	① 변경승인(영 제30조 제 1항)	① 변경승인(법 제 7조 제1항, 영 제30조 제 1항)
231	2)예외		(내용추가)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·기재 또는 그 원료·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(법 제 17조 1항)
232	2)예외(영 제 30조 제3항)	2)예외(영 제 30조 제3항)	2)예외(영 제 30조 제4항, 법 제 17조 2항후단)
232	2)예외		(내용추가)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·기재 또는 그 원료·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(법 제 17조 2항후단)
234	⑤고시	⑤고시	⑤고시 (영 제 31조 3항)
255	③ 제1항에	③제1항에	(2) 2항 제1항에
256	1.국가정보원 2.검찰청 사이	1.국가정보원 2.검찰청 사이	[시행일: 2026. 10. 2.] -공소청 -중대범죄수사청 추가
258	전략물자 마지막 내용	내용 추가	제49조(전략물자기술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)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전략물자기술자문단 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1. 28., 2024. 10. 8., 2025. 10. 1.> 1. 해당 물품등이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·개발·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전용될 가능성에 관한 사항 2. 국제수출통제체제등의 통제대상 물품등에 대한 평가·분석에 관한 사항 3. 전략물자 해당 여부의 판정에 관한 사항 ②전략물자기술자문단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25. 10. 1.>

교재 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.
앞으로 더 정확한 내용만을 반영한 교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.